

AI 분야에서의 경쟁법 이슈들*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 이창훈,** 박규태, 김태석

I. 서론

오늘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정보의 탐색·생산·소통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이용자는 챗봇(chatbot)에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고,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AI 어시스턴트(assistant)를 활용하며, 검색 결과 화면 상단의 AI 요약물 통해 정보를 얻는다. 이처럼 AI는 이미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의 범주를 넘어, 디지털 환경 전반의 기본 인프라(infrastructure)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경쟁법의 관점에서도 새로운 고민의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AI 칩(chip, 반도체) 등 연산자원, 클라우드 인프라(cloud infra), 데이터(data),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그리고 최종 이용자에 대한 AI 서비스 등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복합적 공급망(value chain)이 형성되어 있다. 뒤에서 살펴보게 될 이러한 AI 공급망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여러 경쟁법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망의 특정 단계에서 형성된 시장 지위가 인접 단계로 확장될 수도 있고, 특정 공급망 단계 내에서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여러 형태의 행위들이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본 기획은 총 4부로 연재될 예정이다. 먼저, 본고는 제1부 총론으로 AI 공급망의 구조 및 특성, 그로부터 제기되는 경쟁법적 이슈와 주요 경쟁당국의 동향을 개관하고자 한다. 향후 연재될 제2부에서는 AI 칩 영역을, 제3부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 및 파운데이션 모델 영역을, 제4부에서는 AI 서비스 영역을 각각 검토 대상으로 삼아 AI 공급망의 각 단계별로 제기되고 있는 경쟁법적 이슈들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필자들 개인의 견해이며 소속 법무법인의 입장은 무관함을 밝혀둔다.

** 이창훈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경영위원이자 AI·디지털경쟁법팀, 공정거래그룹 팀장을 맡고 있다.

II. AI 공급망 개관

1. AI 공급망의 4단계 구분

AI 공급망은 ‘하드웨어-인프라-모델-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다층적 공급망이다. 구체적인 구분 방식은 분석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¹⁾ 본고에서는 AI 공급망을 ‘① AI 칩 → ② 클라우드 인프라 → ③ 파운데이션 모델 → ④ AI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의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²⁾

2. AI 칩 영역

‘AI 칩(AI chip)’이란 AI 모델의 학습(training)과 추론(inference)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반도체를 총칭한다.³⁾ AI 연산은 동일·유사한 행렬 곱셈을 방대한 데이터 단위에 동시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산을 처리하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 외에도 수천 개의 코어(core)를 통한 대규모 병렬 처리에 특화된 별도의 가속기가 요구된다.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처리장치)는 본래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위해 개발된 반도체이나, 대규모 병렬 처리에 최적화된 구조로 인하여 현재 AI 가속기의 핵심 지위를 점하고 있다. 고성능 GPU 분야에서 엔비디아(NVIDIA)의 점유율은 90%를 상회한다고 평가되고 있다.⁴⁾

총래의 논의는 주로 데이터센터(data center)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쓰이는 고성능 GPU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추론용 칩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AI 칩 산업의

1) OECD는 AI 공급망을 ‘① 칩 생산 → ② 데이터센터 운영 → ③ 클라우드 플랫폼 → ④ AI 모델’로 구분하였다. OECD, 「Competi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OECD Roundtables on Competition Policy Papers, No. 330 (2025, 11.), 10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라 한다)는 AI 기술 스택(stack)을 ‘① AI 반도체 → ② 클라우드 컴퓨팅 → ③ 데이터·모델 → ④ AI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분하였다. FTC, 「Partnerships Between Cloud Service Providers and AI Developers」(2025, 1.), 8면; 그 밖에 유럽 집행위원회(이하 ‘EC’라 한다)는 이를 7가지 시장(칩 제조,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 데이터 라이선싱(licensing), AI 인력 공급, 생산성 소프트웨어 공급, 챗봇 서비스 공급, 모바일 디지털 어시스턴트 서비스)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EC, 「Competition in Generative AI and Virtual Worlds」, Competition Policy Brief, Issue 3 (2024, 9.), 2면.

2) 위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자원 외에도 개발인력,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전력 등도 AI 공급망의 주요 자원으로 기능한다.

3) AI 칩은 그 용도에 따라서는 크게 학습용 칩과 추론용 칩으로 구분될 수 있고, 그 활용 목적에 따라서는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서버용 칩과 스마트폰·PC 등 최종 기기에 탑재되는 엣지(edge)용 칩으로 각각 나눌 수 있다.

4) 포르투갈 경쟁당국(이하 ‘AdC’라 한다), 「Competition and Generative AI: Access to AI chips」(2026, 2.), 4면.

무게중심이 점차 추론용 칩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추론 단계에서는 학습 단계만큼 방대한 연산량 처리가 요구되지 않고 고속·저소비전력 처리가 중시된다. 이에 빅테크(big tech)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 기존 반도체 사업자의 신제품, 스타트업(start-up)의 추론 전용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등 다양한 추론용 칩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한편,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는 GPU에서의 엔비디아 제공 통합 개발 환경(프로그래밍 모형)으로, 범용적인 병렬 컴퓨팅 플랫폼이다. CUDA 플랫폼은 파이토치(PyTorch), 텐서플로우(TensorFlow) 등 주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프레임워크(framework)에 통합되었고,⁵⁾ AI 학습을 위한 머신러닝에 있어 사실상의 표준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에이엠디(AMD)와 인텔(Intel) 등이 추격하고는 있으나, 누적된 CUDA 코드 자산과 라이브러리(library) 호환성을 고려할 때 고성능 칩 영역에서 엔비디아의 시장 지위에 견줄 만한 사업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

AI 모델의 학습·추론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보아 ① 자체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AI 칩과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하는 방법과 ②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자체 구축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자본 지출을 부담할 수 있는 빅테크 등 일부 대규모 사업자에 국한되고, 다수의 AI 모델·서비스 개발 사업자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을 임대받는 방식으로 학습·운명을 수행한다.⁶⁾ 클라우드 인프라란 바로 이와 같이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storage), 네트워크(network)를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상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의 3개 층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은 기업·개발자에게 GPU 클러스터(cluster)와 그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IaaS·PaaS 영역이다. 이

5) PyTorch는 메타(Meta)가 공개한 오픈소스(open source)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이고, TensorFlow는 구글이 공개한 오픈소스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이다. 두 프레임워크 모두 CUDA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엔비디아 GPU에 최적화되어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JFTC'라 한다), 「Actual Situation Survey Report on Generative AI ver. 2.0」(2026. 4.), 6-7면.

6) 클라우드 서비스의 요금은 통상 CPU-GPU 운영 시간, 저장 용량, 네트워크 전송량, 처리한 토큰 수 등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종량제(pay-as-you-use)' 방식이 일반적이며, 여기에 일정 사용량 약정과 결합된 장기 할인, 데이터 이전 시의 이그레스 피(egress fee) 등 다양한 부과 요소가 결합되는 구조이다.

러한 인프라를 자체 보유하며 글로벌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라 부른다. 글로벌 IaaS·PaaS 영역은 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Azure), 구글(Google Cloud) 등 하이퍼스케일러 3개사가 약 65%~70%를 차지하는 과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오라클, IBM 등 도전자가 존재하나 하이퍼스케일러 3개사와의 격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고, 개별 국가 단위에서도 유사한 집중 패턴이 관찰된다.⁷⁾

4. 파운데이션 모델 영역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를 자기지도 학습(self-supervised learning) 방식으로 사전 학습하여 광범위한 작업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한다.⁸⁾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대한 수의 매개변수(가중치, weights)를 산출하는데, 이 가중치는 모델이 어떠한 응답을 생성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① 그 가중치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모델 출력만을 제공하는 폐쇄형(proprietary)과 ② 가중치를 공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open-weight)으로 구분된다.⁹⁾

AI 산업 경쟁의 중심에 있는 첨단(frontier) 파운데이션 모델 영역은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구글 등 소수의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다. 또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단순한 인프라 제공자를 넘어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자본·공급계약을 통해 모델 개발사와 긴밀히 결합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¹⁰⁾ 즉, 주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들은 자체 빅테크 인프라(구글·메타) 또는 하이퍼스케일러와의 자본·인프라 결합(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아마존·구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7) CMA, 「Cloud Infrastructure Services - Final decision report」(2025.7.), 문단 5.31.-5.35.

8) OECD, 「Develop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markets: New indicators based on model characteristics, prices and providers」,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 No. 37 (2025, 6.), 53면.

9) AdC, 「Competition and Generative AI: Opening AI Models」(2024, 12.), 4면. 2026년 현재 폐쇄형 첨단 모델 시장에서는 오픈AI(GPT 시리즈), 앤트로픽(클로드(Claude) 시리즈), 구글(제미니(Gemini) 시리즈), xAI(그록(Grok) 시리즈) 등이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개방형 가중치 모델 시장에서는 메타(라마(Llama) 시리즈), 미스트랄 AI(Mistral AI), 딥시크(Deepseek), 알리바바(Alibaba) 등이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10) OECD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모델 개발이 자본·공급계약을 통해 긴밀히 결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OECD, 「Competi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17면; 영국 경쟁시장청(이하 ‘CMA’라 한다)도 기업 간 수직적 통합, 파트너십 및 전략적 제휴가 결합되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치사슬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AI Foundation Models: Update Paper」(2024, 4), 8면.

파운데이션 모델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자원은 모델의 학습 및 미세 조정(fine-tuning)에 투입되는 데이터이다. ① 사전 학습(pre-training) 단계에서는 언어 구조와 기초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② 미세 조정 및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RLHF) 단계에서는 이용자의 지시·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목적에 맞춘 데이터가 요구되며 ③ 검색 증강 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을 통한 활용 단계에서는 참조해야 할 정보를 적절히 검색할 수 있도록 정비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파운데이션 모델 영역의 또 다른 동향은 다양한 양식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멀티모달(multi-modal) AI의 정착이다. 종래 텍스트 생성에 특화되어 있던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입출력을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 모델로 진화하면서, 의료·제약·교육·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AI의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추론·분석 능력 자체도 향상되고 있다.

첨단 모델의 천문학적 학습비용과 추론비용에 대한 대응으로, 모델 자체를 효율화하는 기법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¹¹⁾ 대표적으로 ‘증류(distillation)’는 대형 모델이 학습한 풍부한 지식을 소형의 효율적 모델로 전이하는 기법으로, 적은 자원으로도 유사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 스마트폰 등 기기에서 옛지 AI의 최적화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 혼합(Mixture of Experts, MoE)’은 하나의 거대 모델을 복수의 전문가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로 분할하여 입력별로 적합한 전문가만을 활성화함으로써, 모델 전체의 표현력을 유지하면서도 토큰(token)당 연산비용을 절감하는 기법이다. 딥시크 등 일부 사업자가 양 기법을 함께 도입하여 비교적 적은 자원으로 첨단 모델에 근접하는 성능을 구현하였다고 평가받은 사례가 있다.

5. AI 서비스 영역

AI 서비스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챗봇 등) 또는 특정 산업이나 업무에 플리케이션에 결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AI’라

11) JFTC, 「Actual Situation Survey Report on Generative AI ver. 2.0」, (2026, 4), 14면.

부르며 직접 접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의 서비스이다. AI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챗봇 형태(예를 들어 챗GPT, 클로드, 제미니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운영체제 등 기존 디지털 환경에 통합되는 형태[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Copilot), 애플(Apple)의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등], 의료·법률·금융·고객 응대 등 특정 업무 영역에 특화된 형태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 기업은 오픈AI, 엔트로픽, 구글 등 모델 개발사가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거나,¹²⁾ 개방형 모델을 미세 조정하여 자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AI 애플리케이션 영역의 두드러진 양상 중 하나는 기존 디지털 서비스와 생성형 AI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색, 사무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브라우저(browser), 메신저·SNS 등 광범위한 디지털 서비스 안에 AI 기능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양상은 ‘AI 에이전트’의 부상이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를 대신하여 정보 검색, 일정 관리, 상품 구매, 결제 등 일련의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단말기 내부에서 모델 추론을 완결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모델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PC 등의 기기에 탑재된 AI 모델이 실시간 통화 번역, 음성 파일의 문자 변환, 사진의 수정 등 다양한 기능을 기기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온디바이스 모델은 ① 네트워크 단절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하고 ② 자료가 단말 외부로 전송되지 않아 보안·프라이버시(privacy) 측면에서 우수하며 ③ 클라우드 비용을 절감하고 응답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진다.

생성형 AI 기술은 자율주행, 로봇틱스(robotics) 등 물리적 동작을 수반하는 영역에 응용되어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라는 새로운 분야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자율주행에서는 차량에 탑재된 칩이 통신 단절 환경에서도 실시간 추론을 수행해야 하므로 저지연·저전력을 갖춘 차량용 칩에 대한 수요가 부상하고 있고, 자율주행 학습용 합성 데이터 생성을 위한 모델의 개발 경쟁도 활발해지고 있다.

12)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한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호출·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약속된 인터페이스로, AI 분야에서는 모델 개발사가 자사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외부개발자, 기업 등에 유료로 제공하는 표준 통로로 기능한다. 예컨대 사업자가 오픈 AI의 GPT 시리즈 API를 호출하면, 해당 사업자의 자사 서비스 내에서 GPT 모델의 입출력을 마치 외부 부품을 끼워 쓰듯이 활용할 수 있다.

III. AI 공급망의 구조적 특성

이상 살펴본 AI 공급망의 특성 중 경쟁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공통적 특성을 살펴보면 ① 시장집중과 진입장벽 ② 핵심 자원의 공급 부족 ③ 다층적 록인 효과(lock-in effect) ④ 수직결합과 파트너십(partnership) 양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시장집중과 진입장벽

AI 공급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시장이 일부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고성능 GPU 영역에서 앞서 언급한 대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글로벌 클라우드 IaaS·PaaS 영역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 3개사가 과점하는 구도이다. 이러한 집중은 ① 대규모 자본 투자 ② 글로벌 단위의 규모의 경제 ③ 시장을 선점한 효과 등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첨단 파운데이션 모델 영역 역시 일부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진입장벽 자체가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한 번 선두를 점한 사업자가 이용자 상호 작용을 통해 피드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그 데이터가 다시 모델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는 자기강화적 순환을 형성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단기적으로 낮아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¹³⁾ 개방형 모델은 폐쇄형 모델의 진입장벽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첨단 성능에서는 폐쇄형 모델이 여전히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거니와, 개방형이라 하더라도 학습 데이터와 코드까지 함께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재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¹⁴⁾ 소형 언어 모델(SLM)도 대체적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는 있으나, 첨단 일반 지능에 가까운 성능을 요구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형 모델에 대한 수요가 크고, 특정 업무에 특화된 모델 개발에 있어서도 고성능 기반 모델을 보유한 빅테크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

13) OECD는 이용자가 챗봇과 대화하고 AI 어시스턴트의 제안을 수용·거부하는 모든 상호 작용은 피드백 데이터로 축적되며, 이는 모델 학습에 재투입되어 모델 성능을 점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기강화적 순환을 형성한다고 평가하였다.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and Competition」(2024, 5.), 23면, 30면.

14) 나아가 개방형 모델 사업자도 그 라이선스(license) 조건에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조항이나 일정 규모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항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AI 서비스 영역은 외형상으로는 다수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단계인 칩·클라우드·파운데이션 모델에 비하면 진입의 기술적·자본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의미 있는 사업 규모에 도달한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의 수는 제한적이다. 특히, AI 서비스가 최종 이용자에게 도달되는 배포 채널, 즉 검색·운영체제·기기·메신저 영역에서는 일부 사업자의 점유율이 높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자사 또는 특정 AI 서비스를 기본 탑재하거나 우선 노출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 결과, AI 서비스 단계의 경쟁은 모델 자체의 우수성 못지않게 기존 플랫폼 지위와의 결합 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¹⁶⁾

다만, 위와 같은 AI 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을 경쟁법적 우려로 보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경쟁사업자의 수, 점유율, 과거 가격 추이 등 시장의 정적 요소만으로는 AI 산업에서의 동적 경쟁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¹⁷⁾

2. 핵심 자원의 공급 부족

AI 공급망의 핵심 투입 자원이 상당 기간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는 점도 주요한 구조적 특성이다.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자원 배분의 결정권한이 특정 공급자에게 집중되고, 이에 기반한 우선적·차별적 배분 가능성이 시장의 경쟁 조건을 좌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부족은 경쟁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⁸⁾

공급 부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원은 고성능 GPU이다. AI 칩 산업은 파운드리(foundry) 신규 건설, 칩 설계 및 제조 등에 수년이 소요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은

15) OECD 및 JFTC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OECD, 「Develop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markets: New indicators based on model characteristics, prices and providers」, (2025, 6.), 29면; JFTC, 「Actual Situation Survey Report on Generative AI ver. 2.0」, (2026, 4.), 13면.

16) JFTC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디지털 서비스에 자사 생성형 AI를 통합하여 종된 상품인 생성형 AI 관련 시장에 시장봉쇄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적 독점·폐위판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가 그 디지털 서비스에 자사 AI를 통합한 후 경쟁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API 접속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 역시 사적 독점·경쟁자에 대한 거래 방해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JFTC, 「Actual Situation Survey Report on Generative AI ver. 2.0」, (2026, 4.), 31, 34면.

17) 예를 들어, AI 서비스 시장은 무료 이용자 계층의 비중이 크고 API 호출량, 추론 처리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전통적 매출지표만으로는 시장 지위를 정교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EC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량(이용자 수·처리 토큰 수), 추론 처리비용·역량, 모델 구매·다운로드 수, API 호출 수 등을 대안적 시장 지위 지표로 제시하였다. EC, 「Competition in Generative AI and Virtual Worlds」, (2024, 9.), 6-7면.

18) 프랑스 경쟁당국(ADLC), 「Opinion on the Competitive Functioning of th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ctor」(2024.6.) 문단 241-244; OECD, 「Competi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2025, 11.), 29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폭증하는 GPU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칩의 배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일부 글로벌 빅테크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칩 개발도 진행하고 있지만,¹⁹⁾ 이러한 자체 칩들은 대체로 자사 클라우드·기기 내에서 자급되거나 우선 공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엣지 단말 장치의 발전에 따라 일부 추론 작업이 클라우드 외부로 분산될 수 있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학습 영역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클러스터에 대한 의존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추론 영역에서는 워크 로드(work load)별 최적화가 가능한 다양한 가속기가 활용될 수 있어 진입 여지가 보다 넓다는 평가도 있다.²⁰⁾ 이러한 흐름이 AI 칩 영역의 단기적 구조 변화로 이어질 것 인지는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단말과 결합된 추론 영역에서, CPU IP(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비대칭적 접근이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AI 시스템은 가속기가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CPU와의 결합 속에서 데이터 입출력·전처리·후처리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추론 클러스터의 효율성은 CPU와 가속기의 결합도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이에 CPU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암(Arm)이나 인텔 등이 CPU IP 영역에서 사실상의 표준 지위를 점하고 있다.

모델 학습에 투입되는 데이터 역시 공급에 한계가 있기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²¹⁾ 미세 조정 단계에서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강화학습용 데이터는 실제 인간의 피드백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가진 기존 빅테크에게 집중되어 있다. 다만, 데이터의 경우는 단순한 누적량보다 그 품

19) JFTC는 “구글의 TPU, 아마존의 Trainium 등 빅테크의 자체 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자체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러한 자체 칩의 등장이 엔비디아 의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흐름의 단면이라고 평가하였다. JFTC, 「Actual Situation Survey Report on Generative AI ver. 2.0」, (2026, 4.), 8면.

20) OECD, 「Competi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2025, 11), 39면; AdC, 「Competition and Generative AI: Access to AI chips」, (2026, 2), 1-2면.

21)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ACCC’라 한다)는 광범위한 이용자 기반과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통해 기존에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은 사전 학습 단계에서 사업자 간 규모·범위의 우위를 누릴 수 있고, 이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신규·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는 취지로 분석하였다. ACCC, 「Digital Platform Services Inquiry — Final Report」, (2025, 3), 313면; 한편 EC는 고품질 학습 데이터 확보를 생성형 AI 분야의 경쟁상 핵심 이슈로 언급하며, 주요 콘텐츠 보유자(언론사·출판사·소셜 미디어)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C, 「Competition in Generative AI and Virtual Worlds」, (2024, 9.), 3-4면.

질, 구조화, 전문성이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보유 데이터의 양이 그대로 시장 지위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다층적 록인 효과

AI 공급망 각 단계에서의 다층적 록인 효과는 단일한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재정적 차원이 결합된 형태로 작동한다. 칩 영역에서는 엔비디아의 통합 개발 환경 CUDA를 중심으로 형성된 코드·라이브러리·학습 모델 자산을 다른 칩으로 옮기려면 대부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기술적 록인이 형성될 여지가 있다.²²⁾ 추론 단계에서도 소프트웨어 환경이 엔비디아 GPU의 사용을 전제로 구축된 경우가 많아, 다른 칩으로 전환할 경우 상당한 전환비용이 수반되어 엔비디아에 대한 록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²³⁾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독자적 API, 관리 도구, 보안 정책, 운영 노하우가 결합되어 다른 클라우드로의 이전이 사실상 제약될 여지가 있다. 일정 사용량을 약정하면 단가를 할인받되 약정 기준 미달 시 할인이 철회되거나 위약금이 발생하는 방식인 약정지출할인(committed spend discounts)이나 데이터 이전 수수료와 같은 가격 구조 역시 클라우드 단계에서 록인 효과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이다. 파운데이션 모델 영역에서도 폐쇄형 API에 맞추어 최적화된 프롬프트(prompt) 패턴, 미세 조정 데이터의 누적, 출력 형식에 맞추어 구축된 시스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록인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²⁴⁾

다만, 이러한 양상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클라우드 사업자의 특화 서비스에 깊이 결합되지 않고 단순히 가상머신(virtual machine)·스토리지(storage) 자원만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환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또한, AI 워크로드의 자료는 단기적·임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클라우드 사업자 간 마이그레이션(migration) 장벽이 아직 폭넓게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클라우드 이용자 스스로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수의 클라우드 사업자를 함께 활용하는

22) AdC는 CUDA를 기반으로 구축된 코드·라이브러리·모델 자산을 AMD의 ROCm이나 인텔의 oneAPI 환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작성 작업을 요구되고, 이러한 기술적 록인이 AI 칩 시장점유율의 단기적 변동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AdC, 「Competition and Generative AI: Access to AI chips」 (2026, 2.), 13-15면.

23) JFTC, 「Actual Situation Survey Report on Generative AI ver. 2.0」 (2026, 4.), 8면.

24)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etitive Dynamics in Downstream Markets」, OECD Roundtables on Competition Policy Papers, No. 331 (2025, 11.), 20, 34면.

멀티호밍(multi-homing)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4. 수직결합과 파트너십

AI 공급망의 또 다른 특성은 자본·공급계약,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로 각 단계 간 수직적 결합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아마존-구글-엔트로픽 사이의 파트너십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재무투자를 넘어 클라우드 인프라, 모델, 서비스 전반에 걸친 우선공급약정과 결합되어 사실상의 수직결합을 형성한다.²⁵⁾ 또한, 수직결합은 엔비디아와 오픈AI 간 투자 및 컴퓨팅 시스템 공급 약정에서 보듯이 AI·공급망·생태계가 순환적으로 얹히는 이른바 ‘순환투자(circular investments)’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²⁶⁾

이러한 결합 양상은 외부사업자의 신규 진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정 단계에서 형성된 시장 지위가 인접 단계로 전이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배관계 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전통적인 기업결합 규제만으로는 충분히 포섭하기 어려워 보인다.

IV. AI 공급망의 경쟁법적 이슈

AI 공급망의 구조적 특성은 다양한 경쟁법적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 AI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쟁법적 이슈 및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후 제2, 3, 4부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고자 하며, 여기에서는 그 대표적인 유형들만 간략히 언급해두고자 한다.²⁷⁾

25) FTC, ‘Partnerships Between Cloud Service Providers and AI Developers’ (2025. 1.), 21면.

26) AdC, ‘Competition and Generative AI: Access to AI chips’, (2026. 2.), 12면.

27) 참고로, EC는 향후 생성형 AI 관련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상 위험을 ① 핵심 투입 요소(칩·데이터·컴퓨팅·인력)에 대한 우선적·배타적 접근 ② 하류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활용(자사우대·결합판매·끼워팔기) ③ 수평경쟁자 간 합의·정보 교환 ④ 이윤압착(margin squeeze) ⑤ 킬러 인수/역킬러인수(killer/reverse killer acquisitions)의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 EC, ‘Competition in Generative AI and Virtual Worlds’, (2024. 9.), 7-8면.

1. AI 칩 영역²⁸⁾

AI 칩 영역과 관련해서는 차별취급, 결합판매, 상호호환성 제한 등의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자사와의 배타적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AI 칩의 가격, 공급 시기, 물량 등을 차별하는 사례, AI 칩을 다른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킹 장비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사례, AI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가 자사 AI 칩에서만 작동하도록 하는 사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AI 관련 칩 설계에 필요한 IP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사례와 같이, 칩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거래거절 및 접근 제한 이슈도 문제되고 있다.

2.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²⁹⁾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에서는 무상 크레딧(credit)을 제공하여 특정 클라우드 환경에 종속 시키거나, 이그레스 피(egress fee) 등 전환비용을 발생시켜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였다는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다.³⁰⁾ 또한, 클라우드 사업자가 수직통합사업자로서 칩, 파운데이션 모델, AI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사를 유리하게 취급하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자사 칩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경쟁사 칩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대비 유리한 가격 구조를 적용하였다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의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AI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한 사례 등이 거론되고 있다.

3. 파운데이션 모델 영역³¹⁾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해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AI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차별취급 이슈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API, 모델의 업데이트, 새로운 버전의

28) 이후 연재 제2부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29) 이후 연재 제3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30) CMA, 「Cloud Infrastructure Services - Final decision report」(2025, 7.), 15, 241-242면; FTC, 「Partnerships Between Cloud Service Providers and AI Developers」(2025, 1.), 9, 33면.

31) 이후 연재 제3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모텔에 대한 접근 등과 관련된 차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의 학습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자사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 자사 모델의 접근만 허용하고 다른 모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 즉, 운영체제, 검색, SNS, 미디어 서비스 등 대규모의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가 자사 파운데이션 모델 및 AI 서비스에 우선적인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자사 파운데이션 모델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 밖에 특정 데이터 원천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체결 등의 방식으로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사례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사업자를 직접 인수하는 대신 해당 사업자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인력 흡수(Acqui-hire) 사례도 파운데이션 모델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다.³²⁾

4. AI 서비스 영역³³⁾

AI 서비스 영역에서는 기기, 운영체제, 생산성 도구, SNS, 쇼핑, 검색, 가상비서(Virtual Assistant) 등 기존의 디지털 플랫폼 또는 서비스에 특정 AI 서비스를 통합하는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수직통합사업자가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자사 AI 서비스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선(先)탑재하는 사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AI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탑재하는 사례 등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결합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바일 기기에 특정한 AI 챗봇 서비스를 선탭재하는 사례,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AI 서비스별로 차별하거나 자사 서비스가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 검색 서비스 상단에 자사 또는 특정 사업자의 생성형 AI 서비스 요약 검색 결과를 기본으로 현출하는 사례,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특정 AI 서비스를 통합시켜 문서, 메일,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작성 기능에 직접 연동시키는 사례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32) EC는 2024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플렉션 AI(Inflexion AI) 핵심 인력·기술 일괄 영입(이른바 'acqui-hire')과 함께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을 EU 기업결합 규칙(EUMR) 제3조가 규정하는 기업결합(concentration)으로 평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플렉션 AI의 사업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EC 보도자료 IP/24/4727 (2024. 9. 19.); EC, 「Competition in Generative AI and Virtual Worlds」, (2024. 9.), 6면.

33) 이후 연재 제4부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V. 주요 경쟁당국의 연구 및 검토 동향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분야에서의 경쟁법 이슈들에 대해 최근 본격적으로 연구 및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경쟁당국의 연구 및 검토 동향을 간략히 살펴본다. 한편, 개별 경쟁당국들이 AI 분야에 대해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개별 조사 건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재될 제2, 3, 4부의 각 해당 부분에서 좀더 상세히 다룰 계획이다.

1. 유럽

(1) EU 집행위원회

EU 집행위원회(EC)는 2024년 1월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024년 9월 ‘Competition in Generative AI and Virtual Worlds’라는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C는 위 정책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AI 시장의 동향과 진입장벽을 살펴보고 잠재적인 경쟁제한 이슈를 언급하였다.

(2) 영국 경쟁시장청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2023년 9월 ‘AI Foundation Models’ 최초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4년 4월에 갱신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AI 기반 모델 시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경쟁제한 이슈를 분석하였다. 또한, 2025년 7월 ‘Cloud Infrastructure Services - Final decision report’에서 클라우드 시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경쟁제한 이슈를 분석하였다.

(3) 프랑스 경쟁당국

프랑스 경쟁당국(ADLC)은 2024년 2월 생성형 AI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해 6월 ‘Opinion on the Competitive Functioning of th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ctor’에서 생성형 AI 공급망 전반의 진입장벽 및 경쟁제한 이슈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였다. 또한, 2025년 12월 ‘Competitive issues relating to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impact of AI'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AI의 급속한 성장이 에너지 접근 제약으로 인한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4) 포르투갈 경쟁당국

포르투갈 경쟁당국(AdC)은 2023년 11월 생성형 AI 분야의 경쟁상 위험에 관한 이슈 페이퍼(issue paper)를 발표한 후, 이를 확장하여 ① 2024년 9월 'Competition and Generative AI: Zooming in on Data' ② 2024년 12월 'Competition and Generative AI: Opening AI models' ③ 2025년 7월 'Competition and Generative AI: Labour Market' ④ 2026년 2월 'Competition and Generative AI: Access to AI chips'와 같은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 구조를 평가하기 위한 쟁점별 단편 보고서를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다.

2. 미국 및 캐나다

(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4년 1월 클라우드 사업자와 AI 개발사 간 파트너십 및 투자 관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2025년 1월 'Partnerships Between Cloud Service Providers and AI Developers'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와 생성형 AI 개발 사업자 사이의 파트너십이 ① 컴퓨팅 자원, 인력 등 핵심 투입 요소에 대한 접근 제한 ② AI 개발사의 전환비용 상승 ③ 기밀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사업자의 접근 가능성 등이 잠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2) 캐나다 경쟁국

캐나다 경쟁국(CB)는 2024년 3월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etition - Discussion Paper' 토론용 보고서를 공표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025년 1월 'What We Heard'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현행 경쟁법이 AI 분야의 새로운 행위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3. 아시아 및 호주

(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2024년 12월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 보고서를 통하여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가치사슬 전반을 조망하고 관련 경쟁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2025년 12월 ‘데이터와 경쟁’ 정책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자원의 경쟁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2026년 12월 발간을 목표로 AI 서비스 시장에 관한 후속 정책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2)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2024년 10월 토론용 보고서를 공표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025년 6월 ‘Actual Situation Survey Report on Generative AI’ 버전 1.0을, 2026년 4월 위 보고서의 버전 2.0을 발표하였다. 특히, JFTC는 위 버전 2.0에서 AI 관련 시장의 구조를 인프라·모델·애플리케이션의 3개 층위로 정리하면서, 기존 디지털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통합하는 행위를 주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3)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대만 공정거래위원회(TFIC)는 2025년 7월 공개 의견수렴 문서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026년 3월 ‘Public Consultation Report and Policy Statement 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etition’을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① 칩 및 데이터 등 핵심 투입 요소에 대한 접근 제한 ②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자사우대 및 전환장벽 형성 ③ 끼워팔기 및 생태계 통합 ④ 인력 이동 ⑤ 기업결합 ⑥ 공동행위 ⑦ 불공정 마케팅 관행 등 7개 경쟁법적 쟁점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면서, 각 쟁점에 관한 TFIC의 법 집행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4) 인도 경쟁위원회

인도 경쟁위원회(CCI)는 2025년 10월 ‘Market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etition'을 통해 AI 시장 및 생태계 구조, 잠재적 경쟁 이슈, AI 관련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5)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25년 3월 'Digital Platform Services Inquiry - Final Report'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및 생성형 AI 분야에서의 잠재적 경쟁제한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였다. 또한, ACCC는 2025년 12월 'Recent Develop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 Industry Snapshot'을 통해 위 최종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의 AI 분야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4. 국제기구 및 다자 협력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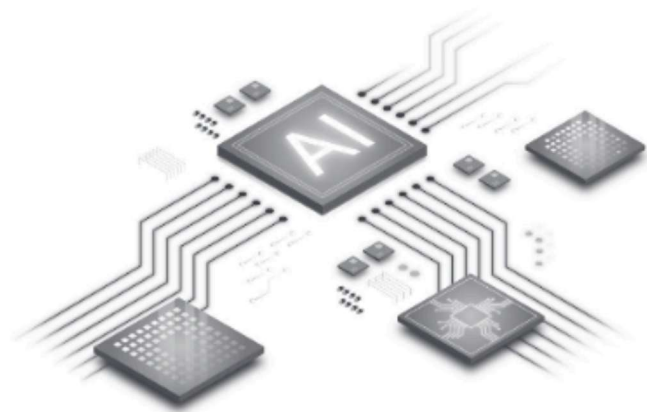
OECD는 2024년 5월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and Competition'을 통해 AI 분야의 경쟁법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이후 2025년 5월 'Competition in the Provision of Cloud Computing Services', 2025년 6월 'Develop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markets: New indicators based on model characteristics, prices and providers'를 연이어 발표하였다. 나아가 같은 해 11월 'Competi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및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etitive Dynamics in Downstream Markets'를 통해 AI 공급망 전반의 경쟁 이슈를 단계적·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 국제 협력 및 공동 성명

EC, CMA, DOJ, FTC는 2024년 7월 공동으로 'Joint Statement on Competition in Generative AI Foundation Models and AI Products'를 발표하여, AI 분야에서의 경쟁상 위협과 기본 원칙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탈리아 AGCM 주관 하에 'G7 Competition Summit'이 개최되어 'Joint Statement on Digital Competition'을

3 AI 분야에서의 경쟁법 이슈들

채택하고, AI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상 우려, 경쟁·혁신 촉진을 위한 원칙, 경쟁당국의 역할 등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하였다. 



* 경쟁저널 제235호에서 'AI칩 생태계의 시장집중과 고착화'로 이어집니다. (편집자 주)